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7 (2015.12.14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06호, 2015.11.27.)」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-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
-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영양급여 범위
- 나485 B형간염 DNA 정량검사
- 나512 세포표지검사

붙임 : 고시 개정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5-623 (2015.12.15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